

## 소독업의 시설·장비 및 인력 기준(제37조제1항 관련)

1. 시설: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,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.
  - 가.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.
  - 나.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.
2. 장 비
  - 가.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
  - 나.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
  - 다. 삭제 <2014.12.31.>
  - 라.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
  - 마.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
  - 바. 보호용 의복(상·하) 5벌 이상
  - 사.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·기구
3. 인력: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